

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꼭 확인하세요



'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됩니다.

- 7. 31일까지 '18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사업장에 대한 '19년도 안정자금 지원은 전면 중단됩니다.
- * 8.1일 이후에는 신고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7. 31일 이내 보수총액 신고



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됩니다.

- '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7.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, 8.1일자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* 다만, 다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, 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속 신청서」(홈페이지 참조)를 제출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.
(지원 중단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음)



하반기부터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.



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.

-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받은 경우,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*됩니다.
- *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



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.

-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,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,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, 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*하셔야 합니다.
- *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(지원금의 5배) 부과 면제
-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하반기(7월~) 고용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.
- * 7.5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현장 점검대상에서 제외

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변경 사항

문의·상담 :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



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.

-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*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,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.

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

▶ 이와 관련하여

- ① 10인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, 7.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(매출전표 등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30인이상 사업장은 30인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.1일(퇴사일 기준)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*됩니다.

* 다만,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됨



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이 폐지됩니다.

-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▶ 그러나, 8.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* 단,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, 계절근로자(C-4)의 경우는 예외 인정

유의사항 • 8.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

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됩니다.

- 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% 이하(19년은 210만원 이하)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,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며,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.

▶ 이와 관련하여

올해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%로 조정됩니다. 내년 보수총액('19년분)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10%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*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'19년도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됩니다.

유의사항 • 일시적인 보수수준(비정기적 수당, 성과급 등)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,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▶ 앞으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,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.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

문의 · 상담 :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



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

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

지원제외 사업주

- ①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
*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및 고용위기·산업위기대응지역 등은 30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,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등은 규모 관계없이 지원
- ②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(시급 8,350원 기준)
- ③ 직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 초과(과세소득 : 개인 사업소득, 법인 당기순이익)
-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- ⑤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이거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 사업주

지원제외 근로자

- ① 사업주(법인 대표이사 포함) 및 해당 사업주의 특수관계인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
- ② '19년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(시급 10,020원)을 초과하는 근로자
- ③ 전년도 보수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(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 시 지원가능)



유의사항

-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,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·권고사직(**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**)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
- 사업장(대표자, 사업장주소 등) 및 신청 근로자(월평균보수, 주소정근로시간)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**14일 이내 반드시 변경신고**
- 보험사무대행기관(세무사, 노무사 등)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환수금, 제재부가금은 사업주에게 부과 되니 **지원요건을 정확히 확인**
- **두루누리 지원사업장**으로서 지급희망서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**특수관계인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**에 대해서 **반드시 지원제외 신청**

근로복지공단